

12. 建設機械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135號 1997. 5. 2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기계검사시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시정권고토록 함.
- 나. 건설기계제작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함(품질관리 차원에서 검사 용시설만 갖추도록 함).
- 다. 건설기계형식승인 업무를 안전시험 대행자에게 위탁함.
- 라.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일수별로 차등 부과토록 함.
- 마. 건설기계 정기검사시 검사소에 입고하여 검사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.
- 바. 대여업 신고·매매업신고·봉인자 지정시 처리기한을 단축함(대여업신고: 14일 → 10일, 매매업신고, 봉인자지정 20일→10일).

개 정 이 유

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시 제작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제작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, 건설기계검사시 안전운행에 시정권고토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·정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